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93
----------	------

제출년월일 : 2016.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상 도서관의 업무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안산시 도서관의 전립, 운영, 독서문화진흥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명 변경
- 조문 수가 많아 조례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이해의 편리를 도모
- 도서관의 포괄적인 업무 조항 신설 : 안 제4조 ~ 제6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조항 신설 : 안 제7조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 안 제8조
- 자원봉사자 배치 조항 신설 : 안 제9조
- 복사 및 인쇄 등 저작권 관련 조항 신설 : 안 제12조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직무 등 조항 개정 : 안 제20조, 제23조
- 독서문화진흥 계획 및 시행 조항 신설 : 안 제26조, 제27조
- 독서시설 기반마련 · 행사추진 조항 신설 : 안 제28조, 제29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30조
- 신규 개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안 별표 1
- 자료 복사 및 인쇄 사용료 조정 : 안 별표 2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6. 7. 13. ~ 2016. 8. 2.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3
 - 방침결정문 : 붙임4

[붙임 1]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 ·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시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이용의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의 진흥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에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별표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6.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관산도서관, 상록어린이 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의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설치 · 운영

제5조(도서관 설치 등) 시장은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시민에 이용 제공
2. 시민과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 전시회 · 독서회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 다.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마.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 비디오테이프 · CD ROM · 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제1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 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증도서 관리) 시장은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 대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자료) ① 시민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 · 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民間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民間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독서활동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독서문화진흥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지원 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독서 시설 기반 마련) 시장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

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해야 한다.

제3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 행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포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중앙도서관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중앙도서관장 양 태호
	계장·팀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계장 이미영
	담당자 성명·전화	김봉근 (행정 3346)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사동)	
관산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성포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28(성포동)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45(일동)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98(고잔동)	
부곡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부곡동)	
일동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71(일동)	
원고잔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33(고잔동)	
본오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49(본오동)	
선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0(선부동)	
대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30(대부북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55(신길동)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동)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9길 20(선부동)	
초지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53(초지동)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5(원곡동)	
반월햇빛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1길 10(팔곡일동)	
본오1동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7길 15(본오동)	
안산동꿈을주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사3동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사동)	
본오3동만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길 9(본오동)	
안산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사동)	
근로복지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선부동)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당곡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고잔동)	
와동별빛누리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18(와동)	
와동책읽는방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38-1(와동)	

[별표 2]

사 용 료

내 용	규 격		기 준	금 액(원)	비 고
자료복사	A4	흑백	1매	40	
		컬러	1매	300	
	B4	흑백	1매	50	
		컬러	1매	600	
전자정보 인쇄	A4	흑백	1매	50	
		컬러	1매	300	
	B4	흑백	1매	50	
		컬러	1매	600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u>	<u>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u>공중의</u>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u>안산시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안산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2007.11.08> 3.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강습·교육 수수료)을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관산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의장을 말한다. <p>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p> <p>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u>시민의</u>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이용의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의 진흥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에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별표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자를 말한다. 6.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u>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u>의장을 말한다.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p>

현 행	개 정 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u>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u>	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자료실)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 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u>도서로</u> 변상해야 하고 동일 <u>도서로</u>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해당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설치·운영
제7조(대출)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 설치 등) 시장은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u>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u>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u>	제6조(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올린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시민에 이용 제공 2. 시민과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자료의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u>이관</u> 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개정2004.04.12, 삭제2007.11.08>	제7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u>호선한다.</u>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u>도서관 전문가</u> ,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	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

현 행	개 정 안
<p>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④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u>한 사항</u></p> <p>3. 독서문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p> <p>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p> <p>다.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p> <p>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p> <p>마.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p>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중앙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자료대출)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p>
<p>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p>	<p>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CD ROM·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p>제1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읽어 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도서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14조(기증도서 관리) 시장은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대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19조 <삭제 2013.11.26.></p>	<p>제15조(위탁자료) ① 시민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u>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u> 위탁할 수 있다.</p> <p>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이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1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작)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u>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작할 수 있다.</u></p>
	<p>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p> <p>② 시장은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독서활동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p>제2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p>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p>

현 행	개 정 안
	<p>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제4장 독서문화진흥
	<p>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27조(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지원 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현 행	개 정 안
	<p>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28조(독서 시설 기반 마련) 시장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할 수 있다.</p> <p>제29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해야 한다.</p> <p>제3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 행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32조(포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1조의2 관련)</p>	<p>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1조의2 관련)</p>

현 행		개 정 안	
명 청	위 치	명 청	위 치
갈풀도서관	안산시 삼복구 갈풀공원안길 16-1(사동)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성포도서관	안산시 삼복구 충장로 528(성포동)	갈풀도서관	안산시 삼복구 갈풀공원안길 16-1(사동)
부곡도서관	안산시 삼복구 성호로 333(부곡동)	관산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산시 삼복구 구릉체육관로 45(일동)	성포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28(성포동)
동안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구릉체육관로 45(일동)
관산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안산시 단원구 광역1로 198(고잔동)
일동도서관	안산시 삼복구 구릉로 71(일동)	부곡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성호로 333(부곡동)
원고잔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33(고잔동)	일동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구릉로 71(일동)
분오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각골로 49(분오동)	분오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각골로 49(분오동)
안산동물들을주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장하로 315 (수암동)	원고잔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33(고잔동)
반월랫빛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남산령1길 10(팔곡일동)	선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0(선부동)
서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영화5길 15(사동)	대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30(대부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신길색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새별길 55(신길동)	신길색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새별길 55(신길동)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9길 20(선부동)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영화5길 15(사동)
분오1동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오목로7길 15(분오동)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9길 20(선부동)
초지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53(초지동)	초지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53(초지동)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0(선부동)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월봉로 15(원곡동)
안산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차들배기로 24-1(사동)	반월랫빛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남산령1길 10(팔곡일동)
서3동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해양로 8(사동)	분오1동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오목로7길 15(분오동)
분오3동장수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각골로 7길 9(분오동)	안산동물들을주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장하로 315 (수암동)
모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원봉로 15(원곡동)	서3동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해양로 8(사동)
근로복지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선부동)	분오3동평판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각골로 7길 9(분오동)
맞곡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고잔동)	안산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복구 차들배기로 24-1(사동)
외동별빛누리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외동로 118(외동)	근로복지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선부동)
선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0(선부동)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별표 2] 사 용 료

시설명	규격	기준	금액(원)	비고
전자복사기 (자료복사료)	B5	1매	30	
	A4	1매	30	
	B4	1매	40	

[별표 2] 사 용 료

시설명	규격	기준	금액(원)	비고
자료복사	A4	흑백	1매	40
		컬러	1매	300
	B4	흑백	1매	50
		컬러	1매	600
전자정보 인쇄	A4	흑백	1매	50
		컬러	1매	300
	B4	흑백	1매	50
		컬러	1매	600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893
----------	------

제안년월일 : 2017. 1. 19.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 수정이유

-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상 업무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 주요골자

- 자료복사 “사용료”에 대 규정하였는 바, 이는 안 제17조(사용료 등)에 명시되어 삭제함 (안 제3조 제3호)
-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 함 (안 제21조)
- 위원의 해촉사유를 삭제함.(안 제20조 제5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종전의 제2조 및 제3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2조 제5호(종전의 제3조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호 “도서관장” 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상록 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의장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고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가 설치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 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수립)” 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등의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독서문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을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도서관 운영위원회)” 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원)장이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앞에 “제4장 독서문화진흥”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4장 독서문화진흥”을 삽입한다.

제28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지원 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별표 1 중 “제2조”를 “제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시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이용의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의 진흥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안산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에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삭제></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4.</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p>	<p>1. ~ 2. (생 략)</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p> <p>2. “대출” 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p> <p>3. “사용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u>별표2에 따른 금액</u>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6. “도서관장”이란 중앙 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 도서관, 관산도서관, 상록 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 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리의장을 말한다.</p>	<p>〈삭제〉</p> <p>3. ~ 4.(원안 제4호부터 5호까지와 같음)</p> <p>5. “도서관장”이란 중앙 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 도서관, 성포도서관, 상록 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 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리의장을 말한다.</p>
	<p><u>제4조~제5조 (생략)</u></p> <p>〈신설〉</p> <p>제7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p> <p>3. 독서문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제20조(도서관 운영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p>	<p><u>제3조~제4조 (원안 제4조~제5조와 같음)</u></p> <p>제5조(명칭 및 위치) 안산 시가 설치한 도서관의 명칭 및지는 별표 1과 같다.</p> <p>제7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등의 수립)-----</p> <p>3.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앙 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④ (생략) <u>⑤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u></p> <p><신설></p>	<p>-----</p> <p>-----</p> <p>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원)장이 되고,</p> <p>-----</p> <p>-----</p> <p>-----</p> <p>-----</p> <p>-----</p> <p>③~④ (원안과 같음) <삭제></p>
		<p>제21조(위원회의 위촉해제 등)</p> <p>위원회의 위촉해제, 제척, 기회,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21조~제26조 (생략)</p>	<p>제22조~제27조 (원안 제21조~제26조와 같음)</p>
	<p>제27조(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p>	<p>제28조(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삭제> (원안 제3항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1조의2 관련) (생략)	<p>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 지원 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u>제28조~제33조 (생략)</u></p>	<p><u>제29조~제34조 (원안 제28조~제33조와 같음)</u></p>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생략)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 관련) (원안과 같음)	